

법규명령기본법안

(김형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90
----------	-------

발의연월일 : 2026. 9. 15.

발 의 자 : 김형연 · 서왕진 · 황운하
백선희 · 김선민 · 박은정
김재원 · 차규근 · 신장식
김준형 · 정춘생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등의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행정이 복잡 · 전문화됨에 따라 법률이 행정부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 위임 범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 제정 이후의 재검토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령과 제도에 분산되어 있어 법규명령의 제정부터 집행 및 사후 관리까지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을 국민이 직접 재검토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독립적인

정비기구를 통한 사후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규명령의 제정·집행·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법규명령안의 위임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조정, 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위법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법규명령 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명령의 심사 및 정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규명령의 제정·집행·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제정·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규명령,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 협업정합성, 소관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법규명령을 제정·집행·정비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으로 위임의 명확성 원칙, 위임범위 일탈금지 원칙, 협업정합성 원칙 및 투명성 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하는 경우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 위임된 사항의 범위 및 법규명령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포함한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법제처장이 법령안을 심사할 때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확인하여 법규명령안의 위임범위 이탈 여부를 심사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법규명령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협업정합성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법제처장이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과 위임근거, 위임적합성 심사 결과 및 정비 이행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법규명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규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자.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성과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차.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행정 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곤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규명령정비 위원회에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법규명령정비위원회가 재검토 결과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규명령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타. 법제처장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 및 정비 현황을 이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법규명령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규명령의 제정·집행·정비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법규명령이 상위법령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제정·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권익을 함께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규명령”이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밖에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
2.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이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규명령을 말한다.

3. “협업정합성”이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와 관련되는 법규명령이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절차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화를 이루어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소관중앙행정기관”이란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법규명령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무를 소관하는 소관중앙행정기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법규명령의 제정·집행·정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의 법 원칙 및 법규명령의 입법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을, 행정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행정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각각 우선 적용한다.

③ 이 법은 제2항의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 및 사후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령을 제정·집행·정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임의 명확성 원칙: 법규명령은 그 위임의 근거와 범위가 법률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위임범위 일탈금지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되어서는 아니된다.
3. 협업정합성 원칙: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는 법규명령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투명성 원칙: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 및 정비 현황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제2장 법규명령의 제정 단계 관리

제5조(위임적합성 검토표의 작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명령안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응시킨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근거 법률의 위임조항
 2. 위임된 사항의 범위
 3. 법규명령안이 구체화하는 내용
 4. 제3호의 내용이 제2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판단 근거
-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적합성 검토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은 법제처장이 정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법규명령안이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상인 경우에는 위임적합성 검토표의 작성을, 규제영향분석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법제처장의 위임적합성 심사) ① 법제처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안 심사 시 제5조에 따른 위임적합성 검토표를 확인하여 위임범위일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법규명령안이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 요청을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협업정합성 평가 및 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규명령안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협업정합성 확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규명령안에 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업정합성 평가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법규명령의 집행단계 관리

제8조(법규명령 현황의 공개) ① 법제처장은 법규명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황에는 법규명령의 위임근거, 제6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9조·제10조에 따른 정비 이행 현황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록된 권고유보 사유가 세분화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법규명령의 사후관리

제9조(위법확인 통보와 정비절차의 연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규명령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규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재검토 결과 개정·폐지 계획 또는 존치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재검토)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명령으로서 제정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5년마다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법규명령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규명령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위임적합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제처의 조직 및 인력과 분리하여 운영하며,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는 법률전문가, 관련 학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검토의 신청) ①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해당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법규명령으로 인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지연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원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재판의 전제성 유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 여부 및 이들 규범통제 절차의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재검토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검토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절차의 조정)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재검토가 진행 중인 법규명령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별도의 재검토를 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결과에 따른 권고 및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재검토 결과 해당 법규명령이 위임범위일탈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

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07조가 정하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기관이 아닌 행정부 내부의 자기통제기구로서,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의결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록하여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권고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국회 보고) 법제처장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 심사 및 정비 현황을 이 법률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정·

개정되는 법규명령안부터 적용하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법규명령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정기재검토 주기를 이 법 시행 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법제처장은 이 법 시행 전까지 제11조에 따른 법규명령정비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위원의 위촉을 완료하여야 한다.